군수와의 대화 민원에 따른 회신문

- □ 민 원 인 : 이명자
- □ 제 목: '광암마을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 반대' 답변에 대한 질문
- □ 민원내용 : 붙임 참고

□ 답 변

○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
질문 1), 2) 답변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

- 가.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규칙)」제58조 제2항에 따라 유원지 내에서는 유희시설, 운동시설, 휴양시설, 위락시설,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나. 다만,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, 조성계획 변경 시 행정절차[변경 안 작성 → 주민열람 공고(설명회 포함) 및 관련기관(부서) 협의 → 군의회 의견청취 → 군계획 위원회 자문 → 전라남도 승인 신청 → 관련기관(부서) 협의 →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]를 거쳐야 합니다.
- 다. 이에, 유원지로 결정되더라도 유희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 절차를 이행해야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라. 토담골랜드 내 유희시설은 관련부서(관광스포츠과)에 확인 결과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,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에 따른 처분이 행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마. 규칙 제57조에 따라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
- 바. 우리 군에서는 해당 시설 운영 시(주로 여름철) 소음 측정 등을 재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며, 소음측정 결과 및 인근 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질문 3) 답변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

- 가. 도시·군계획시설인 "유원지"로의 결정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적으로 얻는 수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, 계획적·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나. 다만, 공청회 및 주민 열람에 따른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여러분 께서 우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질문 4), 5) 답변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

- 가.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오·폐수 방류, 국유지 무단점용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 조회(불법 사항에 대한 확인)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아울러, 개별법에 따른 불법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법한 처분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을 위한 영암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, 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6조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안건이며,
- O 이에 따라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환경영향평가법」 등 관련 법령 및 지침,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.
- O 아울러, 본 결정(변경) 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임을 회신 드립니다.
- O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답변드리며,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영암 군청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(☎ 061-470-2433)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.